

『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 - 개정전 : 「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
 - 개정후 : 「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-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(제7조)
- 광고물등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조항 보완(제14조)
- 허가·신고 수수료 항목(현수기, 전자게시대) 일부 신설(26조)
-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항목을 일부 신설하는 전부개정안으로,
 - 전자게시대가 활성화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자게시대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전자게시대 및 현수기 광고물 허가·신고 수수료 책정도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.